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홍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18

발의연월일: 2025. 3. 4.

발 의 자: 박홍배·김문수·김태년

이수진 • 박정현 • 이연희

이강일 • 민병덕 • 전용기

윤후덕 • 한민수 • 윤준병

박 정ㆍ서영교ㆍ김태선

박희승 • 박지원 • 정태호

박균택 • 고민정 • 이정헌

김우영 • 복기왕 • 김현정

신영대 의원(2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지만,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계열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때 규제가 많아 추가 고용이어려운 상황. 이로 인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현행 법률에서는 계열회사 간의 공동 출자를 금지하고 있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데 제약이 있었음.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함. 이를 통해 실제로 장애인이 고용되는 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.

또한,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중증장애인의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부여함으로써, 장애인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였음.

결론적으로,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될 것임. 이는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(안 제22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본문 중 "제3항에도"를 "제4항에도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제3항에"를 "제4항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1항과 제2항에"를 "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"로 한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장애인 의 근로의욕 증진, 직업생활의 질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로 하고,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22조의5(종전의 제22조의4)제1항 및 같은 조(종전의 제22조의4)제2항제2호 중 "제2조제8호"를 각각 "제2조제8호, 제22조의2(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한다)"로 한다.

제22조의2(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) ①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(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다) 또는 손자회사(같은 법 제2조

제9호에 따른다)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와 함께, 손자회사는 다른 손자회사와 함께 공동출자법인(같은 법 제18조제1항1호에 따른다)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.

- 1. 공동출자법인이 제2조제8호 및 제22조제5항 본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일 것
- 2.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할 것
- 3.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중 하나의 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
- 4. 공동출자법인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
 제33조제4항 중 "제22조의4제1항에"를 "제22조의5제1항에"로 한다.
 제86조제1항제1호 중 "제22조의4제5항을"을 "제22조의5제5항을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제22조의4제6항을"을 "제22조의5제6항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	제22조(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
한 지원) ① (생 략)	한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
	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
	장애인의 근로의욕 증진, 직업
	생활의 질 향상 등을 위해 필
	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<u>②</u> · <u>③</u> (생 략)	$\underline{3} \cdot \underline{4}$ (현행 제2항 및 제3항
	과 같음)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	<u>⑤</u> 제4항에도
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	
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	
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	
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근	
로자 수(그 수에 소수점이 있	
는 경우에는 버린다)를 해당	
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	
자 수에 포함한다. 다만, 장애	i
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	
사업주 중 <u>제3항에</u> 따른 실질	<u>제4항</u> 에
적 지배사업주가 있는 경우에	
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다	
른 사업주가 주식을 소유하거	

나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근 로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 자 수를 실질적 지배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한 다.

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융자

 또는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

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·

<u>⑥</u>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----

제22조의2(지주회사 등의 행위제 한 등에 대한 특례) ① 「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(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다) 또는 손자회사(같은 법 제2조제9호 에 따른다)가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3항제2호 및 제4항 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와 함께, 손자회사는 다 른 손자회사와 함께 공동출자 법인(같은 법 제18조제1항1호 에 따른다)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.

1. 공동출자법인이 제2조제8호

<u>제22조의2</u>(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에 대한 특례) (생 략)

<u>제22조의3</u>(장애인 표준사업장 생 산품의 우선구매 등) (생 략)

제22조의4(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) ①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2조제8호의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 야 한다. 및 제22조제5항 본문에 따른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일것

- 2.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 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할 것
- 3.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중하나의 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
 0 이상을 소유할 것
- 4. 공동출자법인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

제22조의3(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에 대한 특례) (현행 제22조의2 와 같음)

제22조의4(장애인 표준사업장 생 산품의 우선구매 등) (현행 제2 2조의3과 같음)

<u>제22조의4(장애인</u> 표준사업장의 <u>제22조의5(</u>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) ① 장애인 인증 및 인증취소) ① -----

제2조제8호, 제22조의2(일반지 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 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

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 야 한다.
- 1. (생략)
- 2. <u>제2조제8호</u>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
- 3. (생략)
- ③ ~ ⑥ (생 략)

제33조(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) 저

- ① ~ ③ (생 략)
-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<u>제22조의</u> 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 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「장애 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3호 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

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한다)-
②
1. (현행과 같음)
2. 제2조제8호, 제22조의2(일반
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
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
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
<u>한다)</u>
3. (현행과 같음)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∥33조(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)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<u>제22조의</u>
<u> 5제1항에</u>

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 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⑤ ~ ⑪ (생 략)

- 제8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<u>제22조의4제5항을</u> 위반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
 - 2. 제22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 나 인증서를 대여한 자
 - 3. (생략)
 - ② ~ ⑤ (생 략)

 ⑤ ~ ⑪ (현행과 같음) 제86조(과태료) ①
 1. <u>제22조의5제5항을</u>
2. <u>제22조의5제6항을</u>
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현행과 같음)